공무집행방해 ·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· 지방공무원법위반

[대구지방법원, 2005.2.2, 2004고단7906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 김형석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김현익

【주문】

】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.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압수된 투표인명부 1책, 투표용지 10장을 몰수한다.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